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45

발의연월일: 2021. 6. 22.

발 의 자 : 송언석 · 김용판 · 권명호

김정재・金炳旭・정희용

이태규 • 태영호 • 곽상도

정진석 • 박덕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해체공법 등이 적시된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 현장을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 해체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작업이 진행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탑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에도 서울특별시 잠원동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 안 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감리원에게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한 자

제5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
	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
	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감리원에게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
	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
	<u> 여야 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1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

10. ~ 12. (생략)

② (생략)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 설>

7. ~ 11.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 <u>획서를 부실하게</u>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 5. (생략)

③ • ④ (생 략)

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7. ~ 11.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